

## 완산구청 당직전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전주시 완산구 당직전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전 주 시 완 산 구 청 장

###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 ○ 채용분야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근무일
당직전담원 (기간제근로자)	완산구청	1명	2026. 3. 14. ~12. 31.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 02:00 ~ 06:00)	주1회 (토요일)

※ 응시자격 부적합시 합격은 취소되며 후순위 예비후보자를 순차적으로 채용합니다.

#### ○ 근무내용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 고
당직전담원	1명	- 방문·전화 민원 및 현장민원 처리 - 청사내외의 방범·방호·방화·보안상태 순찰 - 기타 당직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 보수기준

- 시간당 지급단가 : 11,220원(2026년 전주시 생활임금 적용 예정)
- 기본급 : 약 650,760원 정도[일급 162,690원 × 4일기준(평균 근무일수)]
- ※ 휴게시간 제외,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적용
- 사회보험(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보수는 근로여건(근무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55세 이상(공고일 기준)
- 자격증 : 운전면허 소지자(제2종보통면허)로 실제로 운전이 가능한 자
- 거주지 : 공고일 전일 현재 전주시 거주자
- 응시제한
  - 전주시청 기관의 마지막 기간제 근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2025. 7. 31. 이후 전주시청 기간제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3개월 미만 단기간 근로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3 우대사항

- 다자녀가정 지원자 우대
  -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의3(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 대상자

## 4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026. 2. 23.(월) ~ 2026. 2. 27.(금) 18:00까지
○ 서류심사 및 서류 합격자 발표	2026. 3. 4.(수)
○ 면접심사	2026. 3. 6.(금)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3. 10.(화)
○ 근무개시	2026. 3. 14. ~ 2026. 12. 31.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통보)

## 5 전형절차 및 합격자 결정

- 전형방법 ⇒ 서류심사(부적격자 제외)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기준 : 응시자격요건 충족여부
  - 면접심사 기준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하며, 면접항목에 따라 점수 부여
    - 면접항목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점수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 점수를 얻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간 면접위원별 최고득점을 합산 평균하여 높은점수자 결정
  - 면접위원이 평가하여 최고득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1개의 평정요소라도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미흡"으로 평정시 불합격 처리
  - 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 후순위 예비후보자를 순차적으로 채용

## 6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6. 2. 23.(월) ~ 2. 27.(금) 18:00까지
-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전자우편(hunter12@korea.kr) ※방문시 평일 09:00~18:00
- 다. 접 수 처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 완산구청 4층 행정지원과
  - 서류접수 현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서류 접수자 부담

## 라.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① [붙임 1]응시원서 ② [붙임 2]이력서 및 [붙임 3]자기소개서 ③ [붙임 4]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용) ④ [붙임 5]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⑤ 운전면허증(제2종보통이상) 사본 ⑥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⑦ 우대사항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격, 경력 등 구체적 기재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미 첨부되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 기간에서 제외함

## 7 채용서류의 반환

- 합격자 결정 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기간 내에 본인 방문하여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 반환 청구 요청 시 반환
- 반환청구 기간 경과 후 채용서류 파기

## 8 기타 유의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불가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채용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시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 후 근로계약기간 중 일지라도 계약서상의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 무효 또는 계약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전주시·완산구청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재공고합니다.

## 9 합격자 결정 후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보건소 또는 병원 발행)
  - 판정결과 “적합”또는“합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붙임 6]부정합격자 합격·채용 취소 확인서 1부
- [붙임 7]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붙임 8]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채용자용) 1부
- 서약서 등 기타 서류





[붙임 3]

##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 명	
-------	--	------	--	-----	--

**※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2매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경력사항(직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등 기재 금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되는 문항(□) 체크>

<p><b>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b></p> <p><small>*공직자의 범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small></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b>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b>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p> <p><small>*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small></p> <p>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p> <p>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p>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p> <p><small>*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small></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b>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b></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b>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b>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b>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b></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b>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b></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b>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b>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완산구청장 귀하**

## 부정합격자 합격·채용 취소 확인서

본인은 완산구청에서 실시한 채용전형에 합격자로서, 본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채용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전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지침」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위 확인자 (인)

**완산구청장 귀하**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완산구청 당직전담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완산구청에 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관련근거** : 전주시 공무원 관리규정 제14조  
전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완산구청장 귀하**

